

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9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2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)

가. 개정이유

-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운영 및 범죄예방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의2)
-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내용 보완(안 제12조제1항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- 안전교육 내용에 ‘안전사고 및 폭행·성폭력 등 범죄예방’ 사항 규정
[복지지원과-12622(2026. 3. 19.)호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563호

- 예고기간: 2026. 3. 10.~2026. 3. 30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1조의2 신설) 파크골프장 내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설치·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취지에 부합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측면에서 타당함.
- (안 제12조제1항) 안전교육 내용에 폭행·성폭력 등 범죄예방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,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적정함.

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, 조문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